2026.7.2.

국회예산정책처 | 나보포커스 | 제169호

nabo Focus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정근주 분석관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배경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증가**

-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당수가 수·위탁 거래에 참여하고, 제조업 중소기업의 50.6%는 타 기업으로부터 생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상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탁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그림 1]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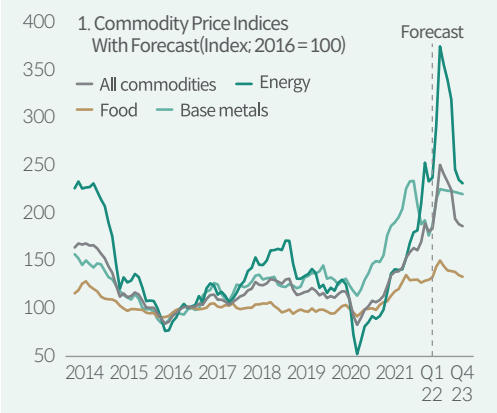

주: '20년 코로나19 시점의 급락과 '21-'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수직상승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

자료: IMF(2022), 세계경제전망(WEO)

[그림 2] 기초금속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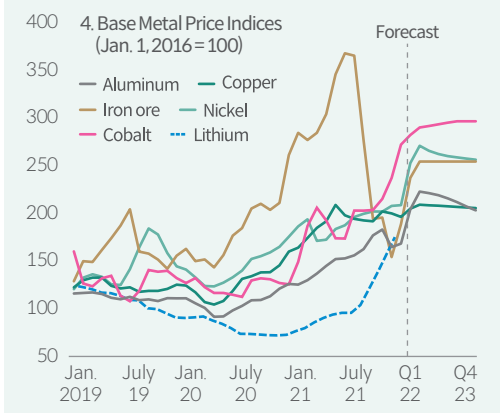

주: 알루미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제조업에 참여하는 중소 기업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21년 이후 가격인상 및 높은 변동성이 나타남

자료: IMF(2022), 세계경제전망(WEO)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연동 여부는 개별기업간 합의에 따라 결정

-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벌점 및 과태료 감경(2분의 1 범위 내),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규제 부담 완화와 행정상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통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제도 활용과 현장 안착을 지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절차

▪ **납품대금 연동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주요 원재료와 가격 변동 기준, 연동 산식 등을 약정하고, 이후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약정된 기준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

- 제도 적용 여부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와 예외 사유에 따라 결정되며, 연동 약정 체결 이후에도 거래 당사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 및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은 기업의 제도 이해 수준과 주요 원재료 판단 기준의 명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음

[그림 3]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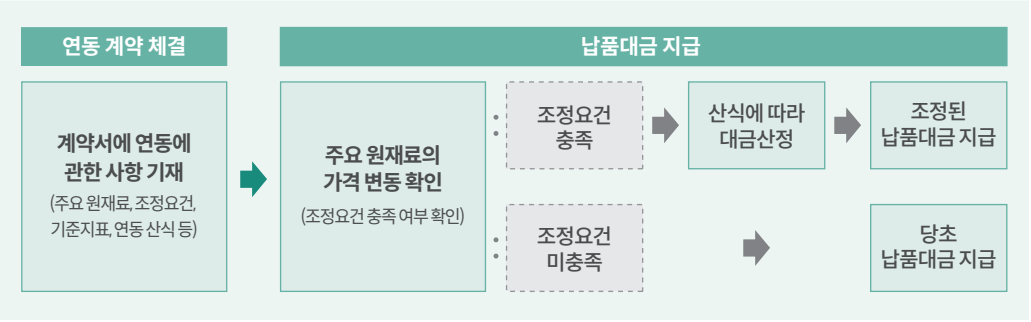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

원재료 정의와 적용 기준

▪ **상생협력법은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료와 재료로 규정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예시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주요 원재료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에서 특정 품목의 원재료 인정 여부가 수·위탁기업 간 협의에 의존

※ 포장재, 부자재, 중간재 등은 거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원재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품목이라도 거래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표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주요 개념

구분	정의
주요 원재료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납품대금에서 그 비용이 10% 이상인 원재료
수탁·위탁거래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거래
연동제 예외사유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①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④의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할 필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

-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수탁기업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2.5%로 나타남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 비교

▪ **일본은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와 에너지비를 포함한 주요 원가요소별 표준 지표를 공표하여 거래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본은 「하청법(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에 따라 2021년도부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전가(価格転嫁)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조정대상은 원재료비 뿐 아니라 에너지비 및 노무비가 포함

[표 2] 한국과 일본의 납품대금 연동 기준 및 적용방식 비교

구분	한국(납품대금 연동제)	일본(가격전가 정책)
연동대상 원가요소	원재료·(에너지비: '26.12.3 시행)	원재료비·노무비·에너지비
가격지표 제공	제한적	정부가 공표
조정 기준	당사자 협의 중심	국가 통계 및 공공 가격지표 활용
기대 효과	협상 부담 존재	협상 기준 명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및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본 중소기업청은 국가 통계와 각종 가격지표를 조정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표준 원가 지표를 공표함으로써 거래당사자 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탁기업의 입증 부담 경감

[표 3] 일본 중소기업청의 주요원가별 활용지표 및 공표 현황

주요 원가요소	활용지표
노무비	최저임금 및 인상률(후생노동성), 노사교섭 타결액 및 인상률(후생노동성, 노동조합총연합회, 경제인협회), 공공공사 설계 노무단가(국토교통성), 일반 화물 운송사업 표준운임(국토교통성, 트럭협회), 임금지수(후생노동성), 소비자물가지수(일본총무성)
원재료비	비철금속·금속 시세 등(일본중앙은행), 목재가격(농림수산성), 농림수산품(재무성), 식품가격(농림수산성)
에너지비	원유·조유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재무성), 주유소 소매가격, 산업가격, 도매가격 등(자원에너지청), 에너지 물가지수(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일본중앙은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및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신력 있는 가격지표 제공 체계가 미흡하여, 거래당사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기준과 연동 산식을 직접 협의해야 하는 구조**
  -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주요 원재료, 가격지표, 조정 요건 및 연동 산식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하나, 정부가 업종별 표준 가격지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상당 부분 거래당사자 협의에 의존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통해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되어 업종별·품목별 표준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 이로 인해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과 납품대금 간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가격지표 선정 및 원가정보 제공 부담은 연동약정 체결을 저해할 우려
    ※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중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과관리 점검

- **납품대금 연동제는 개별 기업 간 계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참여실적 등 운영상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
  - 사업성과로 자발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113개사)'을 중심으로 연동약정 체결 현황, 조정실적을 산출하고 있으나, 전체 수·위탁 거래 시장의 운영 실태를 대표하는데 한계
    ※ 동행기업의 전체 거래건수 97,726건 중 의무 대상 거래는 27.3%(26,972건)이고, 해당 거래의 연동약정 체결률은 71.6%(19,312건)이며, '25년 1분기 납품대금 조정실적은 약 200억원
    ※ 다만, 현재 제시되는 납품대금 조정 규모만으로 원가상승의 보전율, 수탁기업의 수익성 개선, 거래 안전성 제고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
- **다만, 금년 하반기 가격정보 제공 확대 및 실태조사 신설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원재료 1,000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에너지경비 가이드북 제작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26.6~)
  -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

부처간 이원화된 운영체계

▪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동일한 제도이나 소관부처와 적용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제도 이해와 활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2023년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운영
- 기업은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신고 및 분쟁조정 창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각 제도의 교육 및 홍보자료, 실태조사도 각각 운영되고 있어, 제도 이해에 대한 기업 측면의 혼란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부담도 발생

[표 4]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비교

구분	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일	2023년 10월 4일(양법 동시 시행)	
내용	원재료 가격이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10%이내) 이상 변동시,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적용대상[1]	모든 수위탁거래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건비·임차료·전기세 등 경비 제외)	
예외사유	① 위탁기업(원사업자)이 소기업인 경우,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 소액거래(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양 당사자가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재	중기부장관의 시정조치·개선요구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면 공정위 우선)	과징금, 시정명령 등 (하도급법 위반 제재 우선 적용)

주: 1)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조·건설·수리·용역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보다 적용 범위가 넓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연동제의 낮은 인지도

▪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7%였으나, 제도의 세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0% 수준(2024년 조사 기준)**

- 하도급대금 연동제 또한 수급사업자(30.3%)의 인지도가 원사업자(39.3%)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65.4%)'인 반면, 수급사업자는 '제도 이해 부족(40.6%)'을 제시

[표 5]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현황

구분	비중
세부적인내용을상세히알고있음	19.0%
제도의명칭은알고있으나세부적인내용은알지못함	35.7%
전혀알지못함	45.3%
합계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

[표 6]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지도 현황

구분	알고 있음	명칭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름	전혀 모름
원사업자	39.3%	41.5%	19.2%
수급사업자	30.3%	34.3%	35.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종합 시사점

▪ **납품대금 연동제는 거래 당사자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현행 가이드라인의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품목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반영한 구체적인 원재료 판단 기준과 표준 연동 산출식을 정립할 필요
- 단일 원재료비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유연화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복합 가공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 원자재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
-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른 연동제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제도 이해를 돕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부처간 홍보·교육자료, 행정 지침 및 표준계약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발간등록번호 | 31-9700484-001731-14 ISSN | 2672-0280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담당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문의 | 02-6788-373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